

2.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

피고회사의 20〇〇. 〇. 〇.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존재한 이사회와 신주발행결재와 상법 제429조의 적용여부

주주들에게 통지하거나 주주들의 참석없이 주주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예정 주식총수에 관한 정관변경결의와 이사선임결의를 하고, 그와 같이 선임된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및 신주발행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는 부존재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부존재한 이사회에 지나지 않고 그 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도 역시 부존재한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이어서 그 이사회 결의에 의한 신주발행은 의결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한 부존재한 결의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발행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주주는 위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429조 소정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기간에 구애되거나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 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89.7.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1. 주위적으로, (1) 피고회사의 2013. 5.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이사 소외 이○시, 같은 신○현, 같은 최○무, 같은 전○수, 원고 김○정을 해임하고, 소외 박주영, 같은 윤○영, 같은 안○동, 같은 이○종, 같은 이○명을 이사로, 소외 최○병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1) 위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
2. 피고회사의 2013. 5. 13. 자 이사회에서 한 박주영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후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된 경우, 당초의 이사해임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청구

1. 피고회사의 2007. 2. 26.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임시주주총회결의와, 같은 해. 3. 27.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정기주주총회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로 된다(상법 제380조, 제190조 본문). 이러한 법리는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주주총회가 개정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상법’이라고 한다) 제380조의 시행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개정 상법의 시행 후에 확정된 이상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85052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71329,71336,71343 판결)

[별지]

제 1 목 록

1. 피고회사의 정관에 다음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결의

제10조의 2 (신주 인수권) ①신주발행에 있어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으며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 3 (전환사채의 발행)①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십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1개월 전의 사이에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10조의 4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①본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십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이후 그 상환기일의 1개월 전 사이에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3,000,000주 이내의 피고회사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주당 액면금액이상의 가격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한 결의

- 이 상 -

제 2 목 록

1. 피고회사 제16기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의한 결산과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를 승인한 결의
2. 정관중 1주의 금액 및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한 결의
3. 피고회사 임원의 보수, 퇴직금 및 상여금액을 결정한 결의

- 이 상 -

[참조판례] ① 소집통지한 일시, 장소에서의 주주총회가 산회된 후 같은 날 다른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일부주주들만이 모여서 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대표이사가 1987.2.26. 10:00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16:00경 소란으로 인하여 사회자가 주주총회의 산회선언을 하였는데 그 후 주주 3인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위 주주 3인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제1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 주주총회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

피고가 20○○. ○. ○.자 및 20○○. ○. ○.자 및 20○○. ○. ○.자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제1 내지 제3목록 기재의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목록(20○○. ○. ○. 총회)

대표이사 유○○, 이사 강○○, 안○○, 김○○, 박○○, 감사 김○○, 이○○가 각 사임하고, 공동대표이사 이○○, 동 노○○, 이사 김○○를 각 선임한 결의

제2 목록(20○○. ○. ○. 총회)

공동대표이사 이○○, 동 노○○, 이사 김○○, 동 박○○, 감사 김○○, 동 이○○가 각 사임하고, 공동대표이사 이○○, 동 노○○, 이사 김○○, 동 성○○, 감사 김○○, 동 이○○를 중임 및 선임한 결의

제3 목록(20○○. ○. ○. 총회)

공동대표이사 노○○, 이○○, 이사인 박○○, 성○○, 감사인 이○○가 각 사임하고, 최○○, 이○○, 이○○을 각 이사로 김○○, 강○○을 각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참조판례]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그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8.14. 선고 91다45141 판결)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선택적 병합)

1. 선택적으로, 피고의 2012. 5. 18.자 주주총회에서 피고 채○길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정○부, 피고 권○길을 각 이사로, 피고 조○만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의 2012. 5. 18.자 주주총회에서 피고 채○길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정○부, 피고 권○길을 각 이사로, 피고 조○만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3. 2. 10.자로 한 보통주식 30,000주, 2013. 2. 12.자로 한 보통주식 30,000주, 2013. 4. 4.자로 한 보통주식 30,000주, 2013. 5. 22.자로 한 보통주식 10,000주, 2013. 5. 25. 자로 한 보통주식 20,000주의, 각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상법 제190조를 준용하는 입법취지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도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확정 전에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형식상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② 상법 제190조의 준용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범위

상법 제190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 소정의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결의부존재라 함은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 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으나 그 소집 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결의의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전혀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함이 없이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였거나 또는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 볼 수 없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와 같이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인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결의의 외관 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6.6.11. 선고 95다13982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

피고회사의 2005. 8. 3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이○대, 동 김○봉, 동 송○창, 감사 이○응을 각 해임하고, 소외 여○달, 동 김○재, 동 여○말을 각 이사로, 소외 이○규를 감사로 각 선임하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900,000주로 하기로 정관을 변경한 결의, 같은 날 이사회에서 소외 여○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본점을 2005. 8. 31. 부산 ○○구 ○○동 293-5로 이전하며, 신주 300,000주를 보통주식으로 1주의 발행가액 5,000원, 납입기일 2005. 9. 5.로 하여 발행하기로 한 결의, 2005. 9.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를 ○○특수공업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점소재지를 서울로 하며, 본점을 서울 ○○구 ○○동 123으로 이전하기로 정관을 변경한 결의, 같은 날 이사회에서 본점을 서울 ○○구 ○○동 123으로 2005. 9. 5. 이전하기로 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상법 제380조와 제19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 제19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의미와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작성하여 도저히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190조를 준용할 것인지 여부

상법 제380조가 규정하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주주총회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실제의 소집절차와 실제의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190조를 준용할 것도 아니다.

③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 없이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주주총회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결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주총회 의결서가 비록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정도의 하자로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5365 판결)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

피고가 2000. 0. 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김00, 동 정00, 동 김00, 동 김00을 각 이사로, 동 유00을 감사로 선임하고 대표이사인 이사 안00, 동 장00, 동 김00, 동 김00, 동 박00, 동 김00, 동 오00, 동 최00, 동 지00, 감사 안00를 각 해임한 결의와, 2000. 0. 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정00을 해임하고 소외 김00, 동 김00, 동 우00, 동 전00을 각 이사로, 소외 왕00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및 2000. 0. 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 영업보고 및 대차대조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 제2호 의안 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 지급방법은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정관 제6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00주로 한다고 정관을 변경하고, 제4호 의안 임원 개선의 건으로 대표이사인 이사 김00, 이사 김00, 동 우00, 동 김00, 동 김00, 동 전00은 2000. 0. 0.각 사임하고 이사 김00은 같은 날 해임하고 감사 유00, 동 왕00은 2000. 0. 0. 임기만료인바, 임기 연장 중 퇴임하고, 소외 김00, 동 유00, 동 김00, 동 김00, 동 강00, 동 우00을 각 이사로, 소외 왕00, 동 송00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으로) 피고회사의 2008. 1. 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0동, 윤0영, 이0병, 김0종, 김0영, 박0성, 김0용을 각 이사로, 김0선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서 등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3.3.26. 선고 92다32876 판결)

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

피고가 (1) 2001. 2. 14. 주주총회에서 이사 김○조, 이사 이○창, 이사 겸 대표이사 이○규를 각 해임하고, 이사 이○희, 이사 최○순, 이사 고○균, 이사 안○훈, 이사 임○근, 이사 정○노, 이사 정○용, 이사 김○진, 이사 김○호, 감사 추○례를 각 선임하고, 피고의 정관 제1조를 개정하여 상호 주식회사 ○○관광을 주식회사 ○○ 레저타운으로 변경한 결의, (2) 같은 해 3. 31. 이사회에서 이사 안○훈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3) 같은해 9. 9.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정관 제6조를 개정하여 피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10,000주로 변경한 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㉕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주총회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주주총회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목 록

1. 피고회사가 2008. 4. 7.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임○원, 유○민, 지○재, 김○용, 고○숙을 이사로, 소외 방○재를 감사로 각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2. 피고회사가 2008. 6. 4.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주○양, 이○용, 임○영, 조○영, 장○영을 이사로, 소외 임○원을 감사로 각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3. 피고회사가 2009. 10. 17.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주○혁, 임○원, 백○운을 이사로, 소외 이○운을 감사로 각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4. 피고회사가 2009. 11. 8.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주○양, 이○용, 임○영, 조○영, 장○영을 이사로, 소외 임○원을 감사로 각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끝.

[참조판례] ①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다시 선임된 경우 당초의 임원개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②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통지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1692 판결)

☐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

1. 피고 회사의 1969.5.1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박○병, 정○재 및 원고와 감사 이○근을 각 해임하고 이사 양○일, 양○철, 양○오, 감사 정○득을 각 선임한 결의와 같은 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박○병을 해임하고 이사 양○일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1972. 8. 30.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양○일을 해임하고 이사 양○철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

1. (1) 피고회사의 20○○.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원고 양○○, 소외 강○○, 동 양○○, 동 김○○, 동 윤○○, 동 이○○, 동 양○○을 각 이사로, 소외 이○○을 감사로, 양○○을 대표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 20○○. ○.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 양○○을 해임하고, 소외 임○○을 이사로, 소외 차○○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3) 20○○. ○. ○.자 이사회에서 위 양○○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4) 20○○.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차○○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 (5) 20○○.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양○○, 동 양○○, 동 김○○, 동 윤○○, 소외 오○○을 각 이사로, 위 양○○을 대표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5) 20○○. ○.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차○○, 소외 김○○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 (6) 20○○.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이○○, 동 고○○, 동 이○○을 각 이사로, 동 김○○을 감사로, 위 이○○을 대표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7) 20○○.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양○○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8) 위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위 양○○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9) 20○○.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양○○, 동 김○○, 동 윤○○, 동 오○○, 소외 김○○을 각 이사로, 소외 김○○을 감사로, 위 양○○을 대표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10) 20○○.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김○○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 소에 있어서 임기만료된 주주 아닌 이사의 원고 적격 유무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결의의 내용이 이사의 해임결의가 아니라 그 이사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고 할지라도 상법 제386조에 의하여 후임이사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는 후임이사 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12.14. 선고 82다카957 판결)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

1. 피고회사의 1976. 3. 22.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회사의 1976. 6. 3.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한 별지 제2목록기재의 각 결의, 같은 해 6. 14.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제3목록 기재의 결의, 같은 해 8. 26.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한 별지 제4목록 기재의 각 결의, 같은 해 8. 27. 이사회에서 한 별지 제5목록 기재의 결의, 같은 해 9. 6.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한 별지 제6목록 기재의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청구

1. 피고의 2009. 3. 18.자 주주총회에서 이사 최덕신, 안종수, 강창남에 대한 이사선임결의와 2009. 3. 29.자 피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80,000주로 변경한 결의 및 2009. 4. 18.자 이사 서종권, 신세용, 백봉현에 대한 이사선임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피고의 2009. 3. 29.자 이사회에서 1주의 금액 5,000원, 신주식 총수 24,000주의 신주 발행결의와 피고가 2009. 3. 29.자로 한 1주의 금액 5,000원, 신주식 총수 24,000주의 신주발행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4. 피고는 피고 발행주식 중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에 대하여 원고 박은형에게, 같은 목록2 기재 주식에 대하여 원고 전춘근에게, 같은 목록 3 기재 주식에 대하여 원고 원호경에게 각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들이 위 목록기재 각 원고들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의미

상법 제3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의사결정 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판결도 상법 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190조(판결의 효력)를 준용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6097, 36103 판결)

☐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피고회사의 20〇〇. 〇. 〇.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김〇〇, 이사 김〇〇, 이사 김〇〇은 같은 날 각 사임하고, 임〇〇, 김〇〇, 최〇〇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및 같은 날 이사회에서는 이사 임〇〇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20〇〇. 〇. 〇.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임〇〇, 이사 김〇〇, 이사 최〇〇, 감사 이〇〇는 같은 날 각 사임하고, 박〇〇, 안〇〇, 이〇〇을 이사로, 박〇〇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및 같은 날 이사회에서 이사 박〇〇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〇〇. 〇. 〇.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박〇〇은 사임하고 문〇〇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같은 날 이사회에서 이사 문〇〇을 대표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